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○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*으로 '국내주식 등'의 용어 사용 *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9( <u>국내주식 등</u> )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전출자 양도소득세 세율 용어 변경 ○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*에 따라 '주식 등'으로 용어 변경 *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9( <u>국외주식 포함</u> )

 개정 내용

- 국세(소득세)에서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국외 주식을 추가\*(제118조의9)하고 '국내주식 등'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'주식 등'으로 개정(제118조의9~18)함에 따라,

\*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: 현행국내주식 → 개정국내주식 + 국외주식

- 납세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지방세법 세율 조문도 '국내주식 등' 용어를 '주식 등'으로 개정

※ 지방세법 내 국외전출자의 납세의무 범위는 「소득세법」 제118조의9를 준용하고 있어 국세 개정 시 자동 반영

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9조)

|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지방세법 부칙 제9조(거주자의 출국 시 주식 등 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지방 소득세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